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16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허종식 · 유동수 · 박찬대
노종면 · 김교홍 · 이훈기
박 정 · 허성무 · 복기왕
이재관 · 최혁진 · 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인(이하 이 절에서 “무선박운송인”이라 한다)은 인수한 운송물에 관한 개품운송계약을 선박을 소유한 자(이하 이 절에서 “위탁운송인”이라 한다)와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송인이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은 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무선박운송인의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본다.

제7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사용인”을 “선박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795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797조제3항 단서 중 “사용인”을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98조제4항 중 “실제운송인”을 “실제운송인·위탁운송인”으로 한다.
제804조제1항 본문 중 “운송인에게”를 “운송인에게(무선박운송인이 위탁운송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선박운송인 및 위탁운송인 모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인”을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생 략) <u><신 설></u>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을 소유 하지 아니한 운송인(이하 이 절에서 “무선박운송인”이라 한 다)은 인수한 운송물에 관한 개품운송계약을 선박을 소유한 자(이하 이 절에서 “위탁운송 인”이라 한다)와 체결할 수 있 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송인이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 · 해원 ·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은 무선박운송인과 송하 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에 관하여는 무선박 운송인의 선장 · 해원 ·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본다.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 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u>선박사용인</u> 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 ----- ---- <u>선박사용인</u> (무선박운송인 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에 관하여는

④ (생략)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실제운송인
· 위탁운송인-----

-----.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① -----

-----운송인에게(무선박운송인이 위탁운송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선박운송인 및 위탁운송인 모두에게)-----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u> <u>른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위</u> <u>탁운송인을 포함한다)</u>-----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